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여성가족과-20955 |
| 등록일자 | 2016.5.30.  |
| 결재일자 | 2016.5.31.  |
| 공개구분 | 대시민공개       |

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드림스타트팀장 | 여성가족과장 | 복지환경국장          |
| 유수연 | 송정자     | 代이기희   | 전결 05/31<br>이우룡 |
| 협 조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

## 중구 드림스타트 2016년 『안경지원』 계획



복지환경국  
여성가족과

# 중구 드림스타트 2016년 『안경지원』 계획

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자의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기 쉬운 아동의 시력 관리를 위한 안경 및 시력검사를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의 시기에 맞는 건강 관리로 신체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.

## I 추진개요

- 기 간 : 2016. 6. ~ 2016.12.
- 대 상 :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, 임산부
  - 아동 양육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양육자 지원
- 지원내용 : 시력검사 및 안경 지원(1인 연 2~3회)
- 서비스기관 : 우리들안경, 다비치안경 명동점
- 소요예산 : 4,500천원(국비 66.7% 시비 33.3%)

## II 세부추진계획

- 운영방법 : 협약에 의한 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운영
- 협약체결 : 중구청장, 서비스기관장
  - 협약기간 : 2016. 6월 ~
    - 협약 기관 상호 이견 없을 시 계속 유효
  - 지원대상 : 아동 및 양육자, 임산부
    - 가정방문 상담결과 안경지원 필요한 아동 및 양육자, 임산부
  - 지원내용 : 시력검사 및 안경 제작

○ 비용의 분담 및 청구에 관한 건

○ 비밀유지 의무 명시

■ 지원기준 : 지원대상자 1인 연 2~3회 지원

○ 긴급지원, 보건소 지원 등 중복지원 불가

■ 서비스기관 : 2개 기관

| 연번 | 기관명       | 대표자 | 주소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|
| 1  | 우리들 안경    | 정이환 | 중구 동호로 192 |    |
| 2  | 다비치안경 명동점 | 임양빈 | 중구 소공로 62  |    |

■ 비용분담

| 연번 | 기관명       | 본인부담 | 서비스기관 | 드림스타트 | 비고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우리들 안경    | 0    | 60%   | 40%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다비치안경 명동점 | 0    | 40%   | 60%   | 50,000원 초과시<br>본인 부담 |

■ 추진일정

○ 2016. 6. 1. : 안경지원계획 수립

○ 2016. 6. 7. : 중구 ↔ 서비스기관 간 협약 체결

○ 2016. 6. : 서비스 시행

■ 서비스유형 및 제공방식

| 서비스유형 | 대상           | 서비스내용    | 제공유형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맞춤서비스 | 아동 및 부모, 임산부 | 신체/건강 향상 | 연계방식 |

### III 소요예산 및 집행

- 소요예산 : 4,500천원(국비67%, 시비33%)
  - 산출내역 : 150,000원×30명=4,500,000원
- 집행방법 : 서비스기관의 청구에 의거 계좌 입금
- 예산과목 : 여성가족과,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, 아동복지증진, 드림스타트사업, 민간이전, 사회복지사업보조

### IV 기대효과

- 아동의 성장발달에 맞는 적절한 시력 관리 지원
- 안경의 주기적 교체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도모

- 붙임 1. 협약서(안) 1부.  
2. 안경지원 신청서 1부. 끝.

【붙임 1 - 우리들안경】

# 중구드림스타트 「안경지원」 업무 협약서(안)

서울특별시 중구청(이하 “중구” 라 한다)과 우리들안경(이하 “서비스기관” 이라 한다)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“드림스타트 안경지원 사업” (이하 “본사업” 이라 한다)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서는 “중구” 와 “서비스기관”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“본사업” 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“중구”와 “서비스기관”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약사업개요)**

- 1. 사 업 명 : 중구드림스타트 안경지원
- 2. 사업대상 : 드림스타트 추천 아동 및 양육자, 임산부
- 3. 사업내용 : 시력검사 및 안경지원
- 4. 비용의 부담

| 구 분 | 대상자 | 서비스기관 | 중구드림스타트 |
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|
| 부담율 | 0%  | 60%   | 40%     |

**제3조(업무분담 및 협의)**

- 1. “중구” 는 “본사업” 에 적합한 대상 아동을 선별하여 연계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“서비스기관” 과 협의하여 조정한다.
- 2. “서비스기관” 은 사전 협의된 업무사항을 준수하여 “본사업”을 원활히 진행한다.

**제4조(사업비 지급)** “서비스기관” 은 매월 지원아동에 대한 청구서를 익월 5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“중구” 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“서비스기관” : “서비스기관”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“중구” 에 청구
- 2. “중구” :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“서비스기관” 계좌로 입금

**제5조(계약 불이행에 대한 동의사항)** “중구” 와 “서비스기관” 은 제2조, 제3조, 제4조의 사항을 준수하되, 해당 사항의 불이행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민·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귀책 당사자에게 귀속한다.

**제6조(신의성실의 원칙)** “중구” 와 “서비스기관” 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긴밀한 협조로 사업의 최대 효과를 위하여 상호 노력하며,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.

**제7조(비밀유지 의무)**

1. “중구” 와 “서비스기관” 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정보(제3자에 대한 정보 포함)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2. 본 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귀책 당사자 또는 비밀을 유출한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효력 및 기간)** 본 협약은 “중구” 와 “서비스기관” 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양 기관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,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간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. 6. .

**서울특별시 중구청장**

**우리들안경 원장**

**최 창 식 (인)**

**정 이 환 (인)**

【붙임 1 - 다비치안경명동점】

# 중구드림스타트 「안경지원」 업무 협약서(안)

서울특별시 중구청(이하 “중구” 라 한다)과 다비치안경 명동점(이하 “서비스기관” 이라 한다)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“드림스타트 안경지원 사업” (이하 “본사업” 이라 한다)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서는 “중구” 와 “서비스기관”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“본사업” 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“중구” 와 “서비스기관”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약사업개요)**

1. 사 업 명 : 중구드림스타트 안경지원
2. 사업대상 : 드림스타트 추천 아동 및 양육자, 임산부
3. 사업내용 : 시력검사 및 안경지원
4. 비용의 부담

| 구 분        | 대상자                  | 서비스기관 | 중구드림스타트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50,000원 이하 | 0%                   | 40%   | 60%     |
| 50,000원 초과 | 50,000원 초과 비용 대상자 부담 |       |         |

**제3조(업무분담 및 협의)**

1. “중구” 는 “본사업” 에 적합한 대상 아동을 선별하여 연계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“서비스기관” 과 협의하여 조정한다.
2. “서비스기관” 은 사전 협의된 업무사항을 준수하여 “본사업” 을 원활히 진행한다.

**제4조(사업비 지급)** “서비스기관” 은 매월 지원아동에 대한 청구서를 익월 5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“중구” 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“서비스기관” : “서비스기관”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“중구” 에 청구
2. “중구” :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“서비스기관” 계좌로 입금

**제5조(계약 불이행에 대한 동의사항)** “중구” 와 “서비스기관” 은 제2조, 제3조, 제4조의 사항을 준수하되, 해당 사항의 불이행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민·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귀책 당사자에게 귀속한다.

**제6조(신의성실의 원칙)** “중구” 와 “서비스기관” 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긴밀한 협조로 사업의 최대 효과를 위하여 상호 노력하며,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.

**제7조(비밀유지 의무)**

1. “중구” 와 “서비스기관” 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정보(제3자에 대한 정보 포함)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2. 본 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귀책 당사자 또는 비밀을 유출한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효력 및 기간)** 본 협약은 “중구” 와 “서비스기관” 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양 기관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,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간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. 6. .

**서울특별시 중구**

**다비치안경 명동점**

**구청장 최 창 식 (인)**

**원장 임 양 빈 (인)**



【붙임 2】

## [ 안경 지원 신청서 ]

- 보호자 성명 :
- 아동 성명 :
- 생년월일 (아동) :
- 주소 (도로명 주소) : 서울특별시 중구

상기 본인은 중구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에서 진행하는 안경지원을 신청합니다.

| 기관명 | 지원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2016. . . ~ 2016. . . ( 개월) |

- \*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: 시작 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 지원한다.
- \* **본인부담금 발생** : 다비치안경(명동점)은 50,000원 초과시 본인부담금 발생
- \* 차후 취약계층 보장내역 중지 시, 한방병원 연계 지원 중지 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.

2016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신청인 성명 : \_\_\_\_\_ (인)

접수자 : 중구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\_\_\_\_\_ (인)

확인자 : 중구 드림스타트 담당 주무관 \_\_\_\_\_ (인)